

## 붙임2

## 채용 우대사항

구분	우대사항	세부기준	전형별 가산점			적용 대상
			서류	필기	면접	
법정 가점	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</li> </ul> <p><b>* 취업지원대상자 범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</li> <li>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</li> <li>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</li> <li>- 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</li> <li>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</li> <li>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</li> </ul>	5%, 10%	5%, 10%	5%, 10%	
	등록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</li> </ul>	5%	5%	5%	
	지역인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졸업(예정)자</li> <li>채용예정기관 소재(전라북도) 고등학교 졸업자</li> </ul>	5%	-	-	
	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li> <li>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</li> </ul> <p>* 부모명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자</p>	5%	-	-	
	다문화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호 가목, 나목의 대상자, 대상자의 배우자,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</li> </ul>	5%	-	-	모든 채용
	북한이탈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</li> </ul>	5%	-	-	
일반 가점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</li> </ul>	5%	-	-	
	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* 「청년고용특별촉진법 시행령」에 근거</li> <li>*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, 연령 상한</li> </ul>	5%	5%	5%	
	한국사능력 우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</li> </ul>	2%	-	-	
	자격증보유자	* 붙임3 참고	3~5%	-	-	
	우리공사 인턴 경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만금개발공사 체험형 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</li> </ul>	5%	-	-	
	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만금개발공사 체험형 인턴을 우수인턴으로 수료한 자</li> </ul>	2%	2%	-	

1) 일반가점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, 일반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2) 법정가점과 일반가점은 합산 가능하며, 법정가점과 일반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%를 초과할 수 없음

3)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

「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」 제41조의3에 따름